

소송허가결정 고지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010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아래 2항의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제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박정현

(대표당사자) 대구 북구 동북로 16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김정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피 고 : 동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대표이사 고원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홍, 채동현, 곽동우, 정진수, 이주
용, 장황립, 황혜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2층(삼성동)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1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

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3.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임).

4.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은 2010. 9.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약 28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발행주식 총수 12,000,000주)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씨모텍을 인수한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이하 ‘나무이쿼티’라 한다)에 관한 인수자금 조달방법, 경영의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하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즉 “사실은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씨모텍 인수를 위해 외부에서 차입한 차입금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으로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4. 기준으로 위 돈이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라고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나무이쿼티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불식되었고, 총원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1. 3. 24. 씨모텍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당하였고, 이어 2011. 4. 8.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1. 9. 23. 상장폐지되었다.

라. 씨모텍의 관리인이 제출한 관리인 보고서에 의하면, 나무이쿼티 측이 씨모텍의 대표이사인 김태성 등을 통해 씨모텍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1,190억 원 상당을 횡령 내지 배임함으로써 씨모텍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이는 나무이쿼티에 대해 제기되고 있던 횡령, 배임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다.

마.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인 씨모텍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으로 조달한 외부차입금이 최대주주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주식 투자자인 총원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데, 피고가 그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나무이쿼티에 제기되어 있던 각종 횡령 내지 배임의혹을 불식시켰다.

바. 만일 총원이 당시 나무이쿼티의 외부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의견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 총원이 입은 손해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로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 (1)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제외신고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7. 1. 6.까지(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 제외신고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 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등 중 1심에서 성공 시 1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2심에서 성공 시 23%, 3심에서 성공 시 30%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광우

별지1

주식발행개요

발행주식		주식회사 씨모텍 기명식 보통주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12,000,000주
발행가		1주당 2,390원
발행금액		28,680,000,000원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2010년 9월 28일
청약기간	구주주	2011년 1월 20일 ~ 21일
	실권주 일반공모	2011년 1월 25일 ~ 26일
납입일		2011년 1월 28일
증자등기일		2011년 1월 31일
상장일		2011년 2월 11일

제외신고서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박정현

피 고 동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원종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은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2016.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유의사항◇

1.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